이두 문헌 〈이문 吏文〉에 대하여[1]

안 병 희*

1

필자는 이두에 관한 새로운 자료로 〈이문 대사 吏文大師〉를 소개한 바 있다.[2] 〈이문 대사〉는 조선시대 지방의 관청 사이나 관청과 민간 사이에 주고 받는 이두 문서에 널리 쓰이는 한자 성어와 이두를 모으고서 이두에는 한글로 독음을 달아 놓은 책이다. 간본으로서 서울대 도서관의 가람문고와 고려대 도서관에 판식이 다른 목판본과, 사본으로서 도서관과 개인 소장본이 전하므로 그 책은 꽤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두의 독법을 보인 한글 표기 등이 근대 국어 초기의 국어를 반영하고 있어서, 이미 알려진 〈이문 잡례 吏文襍例〉, 〈유서 필지 儒胥必知〉 등보다 앞선 이두 문헌임이 확인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글에서 같은 계통의 책인 〈이문〉을 언급한 일이 있다. 홍순혁(洪淳赫) 교수에 의하면, 〈이문〉은 〈이문 대사〉와 같은 내용이나 한자의 성어까지 한글로 독음을 보인 것이 다르다고 한다.[3] 홍교수의 소개와 다른 문헌에 의하여, 6·25 이전에는 〈이문〉이 홍순혁, 최현배, 이인영(李仁榮) 교수 소장의 세 간본이 있었음이 확실하지만, 어느 한 책도 볼 수 없어서 〈이문 대사〉와의 관계 등은 후일을 기약한다고 부기하였던 것이다.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1) 이 글은 1986년 9월 25일 오후에 한글 학회의 9월 연구 발표회에서 같은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2) 안병희, 史讀文獻 吏文大師에 대하여, 동방학지 38(1983), 특히 〔부기〕 참조.

(3) 홍순혁, 汲古隨錄(二), 향토 6 (1947), 특히 그 글의 '五 吏文과 吏文大師' 참조.

한편 그 글이 발표된 직후에 홍 기문의 〈리두 연구〉에 〈이문〉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음을 동학의 한 분에게서 듣게 되었다. 그러나, 그 소개된 책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완전한 내용을 알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소개에도 분명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실책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에 동국대 도서관에 〈이문〉이 수장된 사실을 알게 되어 실책을 조사할 수 있었다.(4) 이에 그 책의 내용과, 〈이문 대사〉와의 관계를 밝힐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글을 초한다.(5)

2

〈이문〉은 책의 크기가 세로 22cm, 가로 14.6cm 이며 모두 17 장의 작은 목판본이다. 보존 상태는 비교적 좋은 편이어서 낙장이 없을 뿐 아니라, 앞 표지까지 원장의 모습대로 남아 있다. 그러나, 본문의 장 4 의 판심과

(4) 그 도서관에 근무하는 서지학도인 송일기(宋日基)씨에게서 책이 수장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송일기씨는 열람의 편의를 제공하여 주고 책에 대한 서지학적인 설명을 하여 주었다. 깊은 사의를 표한다.

(5) 필자는 이 책과 〈이문 대사〉를 종합적으로 소개할 예정으로 있다. 주(1)의 글에서 행한 〈이문 대사〉의 내용 주석에는 상당한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수정은 뒤로 미루고, 여기서는 큰 잘못만 고쳐 놓는다. 이 책 내용의 이해에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수정에는 박병호(朴秉濠), 최승희(崔承熙) 교수의 교시에 의한 바가 크다. 사의를 표한다. 그런데, 앞의 숫자는 그 글에서의 항목 번호다.

21. '報使'는 관찰사에게 보고하는 일.

41. '捧上'는 납부의 뜻으로도 쓰이나, 일반적으로는 수령의 뜻.

70. '決'은 '決折'(No.303 참조)의 준말, 따라서 '決罪'는 형벌의 결정이나 집행, '決杖'은 장형(杖刑)의 결정이나 집행을 뜻한다.

133. '次知'는 담당 또는 죄인의 친속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후자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갇힌 친속이 '次知並囚'다.

159. '始訟原情'은 원고의 소지에 대하여 피고가 원정을 함으로써 소송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160. '決得'은 사송(詞訟)에서 판결을 받는 일이다.

239. 여기의 '都目'은 도목장(都目牀)이라고도 하는데, 역(役)에 편입된 사람의 명부이며, '牌字'는 호패를 뜻한다.

307. '交易放賣'는 물물교환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일.

판심 쪽의 앞뒤 1행등 책장의 일부가 마모되어 있다. 거기에 조잡한 판각과 후쇄본에 보이는 탈획과 흐릿한 인면(印面)으로 판독이 어려운 데가 많다. 책의 앞뒤(1a 및 17b)에 주문(朱文)의 세로 6.8cm, 가로 4.9cm인 장방인(長方印)이 있으나, 인문은 판독할 수 없다. 다만 이 소장인으로써 관청에서 보관되던 책임은 알 수 있다.

판식은 4주 단변에, 한 쪽의 광곽이 세로 15.9cm, 가로 12cm이며 계선이 있고 7행으로 되어 있다. 1행의 자수가 대체로 16자이나, 적은 것으로 14자(10b1)와 많은 것은 19자(2a1, 3a1, 등)로 균일하지 못하다. 판심은 흑구(黑口)와 백구(白口)가 섞여 있고, 아래 위에 흑어미(黑魚尾)가 마주 놓여 있다. 판심의 서명은 〈이문〉이나, 공백으로 된 것(장 6,7)도 나타난다. 따라서 판식이 매우 정교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책의 내용은 본문이라 할 〈이문〉이 앞에서 장 11의 뒷쪽 3행까지 계속되고, 이어서 부록으로 구구(九九), 육갑(六甲), 토지 면적 계산법, 고갑자(古甲子), 시간 단위의 명칭, 28수(宿)의 명칭이 마지막 장까지 실려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서 〈이문〉은 지방 관청의 서리를 위한 편람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겠다. 앞 표지의 목록 제첨(目錄題簽) 자리에 쓰여진 '時覽'이란 제목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 책에는 장 17의 뒷쪽 좌변의 이격(耳格) 안에 '順治十五年正月 日開刊'이란 간기가 있다. 순치 15년 곧 1658년(효종 9년)에 이 책이 출판되었음을 말한다. 간행지에 대한 기록이 없으나, 뒤에 말할 한글 표기로 미루어서 중부지방의 간행으로 보인다. 그런데, 간기의 '개간'을 글자대로 해석하여 이 책을 원간본으로 단정할 것은 못된다. 15세기의 불경 언해서를 중간하면서도 간기에 '개간' 또는 '개판(開板)'이라 한 예가 많기 때문이다. 위에 설명된 판각의 조잡함이나 판식의 정제되지 못함을 고려한다면 중간본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것이 글자대로 원간을 뜻한다 하더라도 이 간기는 책의 가치를 높여 주는 것이다.

홍순혁교수나 이인영교수, 또는 〈리두 연구〉에 의하여 소개된 〈이문〉에

는 간기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에 대한 언급이 없었을 뿐 아니라 간년의 추정을 책의 형태와 내용으로 행하였던 것이다. 앞서 소개된 〈이문 대사〉나 이미 알려진 〈이문 잡례〉 등의 이두 문헌에도 그러한 간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두 독법의 한글 표기 등에 의하여 상대적인 연대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절대 연대가 1658년인 이 책으로써 이두의 근대 국어 초기의 독법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그 독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이두 문헌의 연대를 보다 분명히 할 수 있게도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이 이두의 연구에 주는 가치는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는다.

3

간기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나, 이 책과 이미 소개된 다른 〈이문〉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최현배교수의 소개는 이두 문헌이라는 언급뿐이므로 여기에서 다룰 수가 없다. 홍순혁, 이인영교수가 소개한 책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판본의 같고 다름을 따지는 일은 무리다. 한글의 독음이 달리고 부록이 있는 점에서 같은 책이나, 간기의 언급이 없는 점에서 이본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가능할 뿐이다. 그러나, 같은 판본이라 하더라도 보존상태에 따라서는 간기가 마모되거나 훼손되어 볼 수 없는 일이 흔하다. 간기만으로 내린 추측은 실책이 나타나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리두 연구〉에 소개된 책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에 그 책(이하 연구본이라 부른다.)과 이 책의 관계를 따지기로 한다.

연구본도 모두 17장으로 되어 있고 부록의 내용까지 같다. 〈리두 연구〉에서는 연구본이 16장으로 〈이문〉이 장 10 뒷면 3행까지 실려 있다고 하나, 앞의 1장을 잘못하여 빠뜨린 결과다. 〈리두 연구〉에서 장 8 앞면 6,7행과 뒷면 1,2행이 전부 떨어져 없어졌다고 한 기술이 있는데, 그 곳

은 이 책 곧 동국대본의 같은 장, 같은 행에 해당된다. 소개된 뒷 부분의 내용이 두 책에서 꼭 같으므로, 결국 장 9, 10 을 〈리두 연구〉는 1 장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책의 장수와 부록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같으나, 〈이문〉의 내용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분명한 이본인 것이다.

첫째로, 두 책에서 오각이 다 나타나나, 연구본이 심한 편이다. 장 1 에서만 보더라도 이 책은

右所陳爲白內等우소딘ᄒᆞᆷ갈든 奴矣段노의단 爲相考事위상고ᄉᆞ(1a)

와 같이 오각이 없으나, 연구본은

右所陳爲白內等우소딘ᄒᆞᆷ닉든 奴矣갈든段公事爲相考事노의□공ᄉᆞ위상고ᄉᆞ (1a)

로 큰 오각이 나타난다. 여기 □은 책이 헐어서 자형이 판독되지 않은 것이나 '단'으로 추정되므로 문제가 아니지만, '갈든'은 'ᄒᆞᆷ닉든'의 '닉든'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야 되고 '奴矣段'과 '公事' 이하는 두 항으로 분리되어야 하는 잘못이다. '爲白內等'의 독음을 'ᄒᆞᆷ닉든'이라한 것은 이두의 후대 독법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奴矣段'은 천민이 관아에 제출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구절이고, '爲相考事'는 관청 끼리 즉 공사(公事)로 주고 받는 문서의 제목이므로 동국대본과 같이 분리되어야 할 곳이다. 연구본의 '公事'는 후대의 보완으로 보이는데, 뒤에 말할 〈이문 대사〉와의 비교와 '公事'가 추가된 행의 자수가 적어도 20 자여야 되는 무리에 의한 추정이다. 이러한 오각으로써 연구본은 이 책보다 늦게, 그리고 상태가 좋지 않은 책을 복각한 것이 아닌가 한다.

둘째로, 이 책은 구개음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나, 연구본은 t 구개음화 뿐 아니라 k-구개음화까지 나타난다. t 구개음화의 예를, 그것이 나타나지 않은 동국대본으로 대조하여 보이면

相考處置상고처치—상고처티(2b)

身致富足신치부족—신티부족(10a)
的實爲白去等져실ᄒᆞ옴겁등—뎍실ᄒᆞ옴갈든(7a)

과 같다. 이중 '置'는 연구본에서도 '置簿티부'(2a)와 같이 나타난다. k-구개음화의 예는 〈리두 연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已爲決折이위결졀—이위결졀(10b)
結縛亂打덜박란타—결박난타(11a)

로 나타난다. 이들 예의 '決, 結'은 연구본에서

決罪決杖결죄결댱(3a)
更推結尾깅츄결미(10b)

와 같이 구개음화되지 않은 용례가 더 많다. 그러나, '結縛덜박'의 예에서 이들 구개음화의 현상은 확인되는 것이다. 한편 이두의 독음 '저'가 '져'로도 표기된 것도 이 현상과 관련된 혼란으로 보인다. 뒤에 동국대본을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其等徒져드내—저드내(3a)
其等徒根派져드내근패—저드내근패(7b)

세째로, 한자 또는 이두의 독음에서 연구본은 심한 혼란을 보인다. 둘째의 예들이 바로 그러하지만, 그밖에도 '其'의 독음이

持(恃의 잘못)其頑惡시기완악(6b), 不無其責블무기칙(9a); (欲免)其役욕면긔역(8b), 其惡不測긔악불측(8b)

과 같이 '기' 또는 '긔'로 나타나는데, 동국대본은 '기'로만 나타난다. 경어법의 접미사를 표기한 이두 '白'의 독음도 대부분 이 책과 같이 '옴'으로 되어 있으나 연구본에서

爲白內等ᄒᆞ숨닉든(1a), 爲白置ᄒᆞ숨두(3a), 爲白良結ᄒᆞ숨아져(3b)

등과 같이 '숨'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혼란에서도 연구본이 후대의 판본

임이 분명하다.

이상의 설명에 의하여 연구본의 〈이문〉은 이 책보다 거칠며 후대의 간행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구개음화의 예로써 연구본이 지방판임을 판정할 수 있다. 아는 바와 같이 t구개음화와 k-구개음화가 함께 나타나는 방언은 남부방언과 함경도방언이기 때문이다. 〈리두 연구〉에 의하면 연구본이 함흥에서 발견된 책이며, 붓으로 '吉州, 明川'등 함경도의 군명이 써 있다고 한다. 따라서 연구본은 함경도의 어느 고을에서 간행된 책으로 생각된다.

4

이제 이 〈이문〉의 체재와 내용을 보기로 하는데, 설명의 편의상 이미 소개한 〈이문 대사〉와 비교하여 살피기로 한다. 홍순혁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문〉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한자 성어에도 한글로 독음을 단 점이 〈이문 대사〉와 다르다. [사진 참조] 그러나, 자세히 보면 내용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이문 대사〉에 수록된 항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문서의 허두와 결말부분에 투식으로 쓰이는 한자 성어와 이두, 둘째 문서 안에 널리 쓰이는 한자 성어와 이두, 세째 흔히 쓰이는 이두, 네째 공문서 결사의 투식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문〉은 첫째와 둘째 부분만으로 되어 있고, 세째와 네째 부분이 없다. 절반이 없는 셈이지만, 항목으로 보면 둘째 부분이 책의 거의 전부가 된다. 우리가 나눈 〈이문 대사〉의 항목은 모두 378항인데, 둘째 부분에 속하는 항목은 315항인 것이다. 홍순혁교수가 두 책의 내용을 같다고 한 것도 이러한 데에 이유가 있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째와 네째 부분에 속하는 52항목이 〈이문〉에서는 없으므로 결코 내용이 같은 것은 아니다.

두 책에 공통으로 실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다. 첫째 부분에서만 보아

도 분명히 드러난다. 즉 민간에서 관청에 제출하는 문서의 허두를 보이고 이어 관청 사이에 주고받는 문서의 허두를 보이면서 〈이문〉은 '爲相考事'(1a)만 들었으나,(6) 〈이문 대사〉는 '公事爲相考事云云'(1a)으로 되어 있다. 전자가 공문서의 첫머리에 놓이는 제목을 하나 보인 데 대하여, 후자는 공문서일 경우에, 다시 말하면 공사로써 주고받는 문서의 경우에는 첫머리에 그러한 제목이 놓인다고 한 것이다. 또 첩정(牒呈)에 계속하여 관찰사가 고을에 내리는 관문(關文)의 허두와 결사를 보인 곳에서도 비슷한 차이가 나타난다. 〈이문〉은 '某使爲行下事 合行移關請'(1b)으로만 되어 있으나, 〈이문 대사〉는 '又某使爲行下事云云 合行移關請(同前)'(1a)이라 하여 바로 이 앞에 보인 첩정의 결사인 '合行牒呈伏請照驗施行 須至牒呈者 右牒呈某牧使府使郡守'(1a)에서 '照驗施行' 이하가 생략되었음을 '同前'이란 협주로써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서, 우리는 〈이문〉의 내용이 〈이문 대사〉 보다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것임을 알 것이다. 나아가서 〈이문〉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 〈이문 대사〉란 추정도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이문 대사〉의 세째와 네째 부분으로써도 지지를 받는다. 세째 부분에 수록된 이두는 49항에 이른다. 그중의 2항이 둘째 부분에 이미 나타난 것이므로 실지로는 47항이지만, 47항의 이두가 〈이문 대사〉에 추가되었다고 함이 온당한 해석이다. 〈이문〉이 뒤에 되었다고 한다면, 이들 이두의 삭제를 설명할 길이 없다. 네째 부분은 공문서의 결사를 보인 3항인데, 〈경국 대전 經國大典〉 권 3 〈예전 禮典〉의 첩정식(牒呈式), 평관식(平關式), 첩식(帖式)의 결말 투식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위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첩정식과 평관식의 결사는 둘째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므로, 네째 부분은 중복되어 있다. 이 부분은 추가보다는 삭제가 쉽게 설명될 듯하다. 앞선 책의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였다고 함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는 〈이문〉이 오히려 뒤에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6) 여기에서는 한글 독음이 생략되었다. 독음이 문제되지 않을 경우는 모두 동일하다.

네째 부분은 단순한 중복이 아니다. 둘째 부분과는 달리, 실제 공문서와 꼭 같이 2행으로 써 보인 것이다. 둘째 부분에서는 첩정의 뒤에 계속된 관자의 경우에 같은 용어는 생략하였지만, 네째 부분에서는 같은 순서로 실은 관자의 경우에도 '合行移關請／照驗施行[illegible]須至關者 右關 某衙門'(8b)과 같이 전문을 그대로 싣는다. 공문서의 결사에 쓰이는 이러한 서식에 대한 지식은 문서를 다루는 서리에게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문〉에 세째 부분을 추가하고서 뒤에 네째 부분을 추가하여 된 것이 〈이문 대사〉라 함이 정당한 추정인 것이다.

두 책은 부록인 구구(九九) 등의 유무로도 차이가 난다. 〈이문 대사〉의 간본에서는 부록이 실려 있지 않은 것이다. 이 부분도 책을 고쳐 만들면서 삭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한 사본, 곧 연세대 도서관 소장본에는 〈장량 여결 張良餘訣〉이라 하여 행산법(行算法), 작석법(作石法), 해두법(解斗法), 구구(九九) 등이 부록으로 실려 있다. 그러므로, 현재 전하는 간본에 원래 있던 부록이 전승과정에서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부록에 대한 차이는 〈이문 대사〉의 간본이 더 나타날 때까지 언급을 유보함이 옳지 않을까 한다.(7) 그러나, 모든 간본에 그 부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문〉과 〈이문 대사〉의 선후에 대한 추정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 부록은 글자 그대로 부록이므로 그 삭제는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5

이 책에 수록된 이두에 대하여 차자(借字)와 한글 독음을 설명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이두 연구에 기여될 가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문〉의 이두가 차자와 한글 독음에서 이두

(7) 연세대 도서관의 김상기씨에 의하면, 그 도서관 소장인 〈이문 대사〉사본은 홍순혁교수가 소장한 책이라 하며, 홍교수는 앞의 주 (3)의 글에서 최현배선생의 〈이문 대사〉를 베껴 두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최현배선생 소장의 목판본에는 그러한 부록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문헌으로는 가장 오랜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문 대사〉가 오랜 모습을 보인다고 한 일이 있었으나, 이 책은 그보다도 더 오랜 것이다.

먼저 차자에서 그 사실을 보기로 한다. 차자는 빌어쓰는 한자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시대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다. 이 책의 차자도 다른 문헌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오직 한 예에서 다르다. 조사 '-ᄲᅮᆫ'의 표기인 차자가 그것이다. 이 책에는 '弊不喩ᄲᅮᆫ안디'(2a)와 같이 '弊'으로 나타나는데 다른 문헌에서는 '㓗'으로도 표기되어 있다. 실제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弊 : 弊不喩ᄲᅮᆫ안디(이문 대사 1b), 叱分不喩ᄲᅮᆫ아닌지(이문 잡례 1b), 節叱分디위ᄲᅮᆫ(동 2b)

㓗 : 分叱不喩ᄲᅮᆫ아닌지(유서 필지 45b), 㓗ᄲᅮᆫ, 是㓗이ᄲᅮᆫ, 節㓗디위ᄲᅮᆫ, 㓗不喩ᄲᅮᆫ아닌디(이두 편람), 㓗不喩ᄲᅮᆫ아인지(전율 통보), 㓗不喩ᄲᅮᆫ아닌지(교금 석림)

용례의 '叱分, 分叱'은 각각 '弊, 㓗'과 같은 차자이므로, 이 책은 〈이문 대사〉, 〈이문 잡례〉와 같고 그밖의 문헌과 같지 않다. 그런데, 〈대명률 직해 大明律直解〉나 〈양잠 경험 촬요 養蠶經驗撮要〉 등 오래된 이두 자료는 모두 '叱分' 또는 '分'으로 나타난다. 후대의 자료에서 비로서 '㓗, 分叱'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이 책의 차자가 오래인 것은 확인된다. 그러나, 예가 하나일 뿐아니라 〈이문 잡례〉 등에도 나타나는 점에서 이 책의 가치는 한글 독음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한글 독음의 경우에도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이문 잡례〉 등에 나타난 한글 독음과 맥을 같이한다. 국어의 변천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가장 오래된 한글 독음은 바로 그 차이에서 알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문 대사〉나 이 책이 알려지기 전에 간혹 제기된 이두 문헌의 한글 독음에 대한 회의는 불식될 것이다. 그 독음은 17세기 중엽까지 소급됨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두 문헌의 한글 독음은 전통적인 독음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이 보이는 한글 독음의 오래된 모습이란 전통적 독음의 가장 고형을 말한다.

고형은 우선 중세 국어의 어형을 보이는 다음 예에서 보게 된다.

更良가시야(2b), 舍音ᄆᆞᄅᆞᆷ(2a), 適音相逢마ᄌᆞᆷ상봉(6a), 望良白去乎ᄇᆞ라옵가오(7a), 矣身耳亦의몸ᄂᆡ려(2a)

이들 어형에 나타난 ·, ㅱ은 다른 문헌에서 ㅏ, ㅸ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받침에서 ㄷ, ㅅ이 구별되지 못하고서

捧上밧자(2a), 已爲捧上이위밧자(6a)

와 같이 ㄷ이 ㅅ으로 표기되거나 반대로

始叱비롯(2b), 爲有去乙ᄒᆞᆫ가늘(5b)

과 같이 ㅅ이 ㄷ으로 표기 되며, 자음으로 시작된 어미 앞에서 어간 말음 ㅅ이 ㅅ으로도 표기되나 ㄱ으로도 표기되어

役只겻기(2a), 役只除良긱(겨의 잘못)기더러(5b)

와 같이 혼란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은 근대 국어 초기의 문헌에 흔한 것이므로, 이 책의 연대에 비추어서 당연한 표기라 하겠다. 다른 문헌에서도 이들 혼란된 표기는 나타난다. 중세 국어의 어형을 보이는 위의 사실로써, 우리는 이 책의 한글 독음이 가장 오랜 것임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책의 한글 독음에는 구개음화와 순음화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실에서 전통적 독음의 고형을 보게 된다. 이 현상들은 일반 한자의 독음 표기에도 나타나지 않지만, 이두의 독음에서

侈音다딤(1b), 秩秩以디딜로(4a), 叅不喩ᄉᆞᆷ안디(2a), 帖字톄ᄌᆞ(2a)

와 같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 앞에서 ㄷ, ㅌ이 정확하게 표기되고,

退伊相考믈리샹고(7b), 並只다므기(5b), 況弥ᄒᆞ믈며(6b), 矣身茂火의몸더브리(9b)

와 같이 순음 뒤에서도 모음 ㅡ, ·가 원순모음 ㅜ, ㅗ로 표기되는 일이 없다. 이 사실은 〈이문 대사〉에도 꼭 같이 나타나나, 다른 문헌은 모두 달라서 구개음화와 순음화가 이루어진 표기를 보이는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의 가치를 높여 주는 사실로서 중세 국어의 이두 독법에 ㅿ의 존재를 암시하는 한글 독음의 예를 들 수 있다. 경어법의 접사를 표기한 이두의 '白'은 다른 문헌에서 거의 '숣'으로 독음이 표기된다. 이 책을 보완하고 수정한 〈이문 대사〉까지 일부의 예에서는 '숣'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책은 다음과 같이 모두 '옳'으로 표기되어 있고,

爲白齊ᄒᆞ옳져(3a), 爲白遣ᄒᆞ옳고(3a, 8a), 爲白置ᄒᆞ옳두(3a), 是白在如中이옳견다히(7a), 是白乎旀이옳오며(9b), 望良白去乎ᄃᆞ라옳가오(7a)

〈이문 대사〉를 포함하여 다른 문헌에서 '삼'으로 읽히는 이두가

爲只爲ᄒᆞ기암(2a)

과 같이 '암'으로 표기되어 있다. '白'은 모두 중세 국어의 겸양법 접사 '숣', '爲'는 중세 국어의 '말미삼—'의 '삼—'의 조건과 같은 환경에 나타나 있다. 중세 국어라면 두음으로 ㅿ이 나타날 환경인 것이다. 근대 국어의 문헌에서 '숣, 삼—'이 '옳, 암—'으로 표기되듯이, 그 ㅿ이 ㅇ으로 표기되어 이 책의 '옳, 암—'이란 독음이 되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두 독법에서의 ㅿ의 추정은 조심스럽게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세 국어에서 '사'로 나타나는 강세의 조사는 이두에서 '沙'로 표기되는데, 이 책의 한글 독음도 다른 문헌과 꼭같이 '사'인 것이다.

良中沙아히사(2b), 爲白良沙ᄒᆞ옳아사(5b), 是沙餘良이산나마(9~10)

이러한 독음으로써는 중세 국어의 독법에서 '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없다. 이 책과 같이 '사'로 읽혔다고 함이 온당하다. 여기에서 한글 표기의 어형에 ㅿ이 나타난다고 하여, 그 어형에 대응하는 모든 이두의 독법에 ㅿ이 추정되지는 않음을 알게 된다. 이 책에 의한다면, ㅿ이 나타난

어형에 대응하는 이두로서 훈독되는 차자에 한하여 ㅅ의 존재가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제약은 있지만, 중세 국어의 이두 독법에 ㅅ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 책의 '白, 爲'의 한글 독음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8)

지금까지 설명된 한글 독음 이외에 이 책에는

爲白內等ᄒᆞᆷ갈든(1a), 別乎벼림(2a), 不冬안더(2b), 卜役지역(5b), 爲白去等ᄒᆞᆷ갈든(7a)

과 같은 독특한 독법이 보인다.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책의 연대에서 가장 오랜 한글 독음인 점은 분명하다. 앞으로 이두 연구에서 이러한 독음들이 검토되기를 바란다.

6

지금까지 책의 절대 연대가 분명하면서도 가장 오래된 이두 문헌인 〈이문〉에 대하여 서지, 이본, 체재와 내용, 수록된 이두를 설명하여 왔다. 동시에 비슷한 이두 문헌인 〈이문 대사〉와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거기에서 〈이문〉이 매우 중요한 이두 문헌으로서 이두 연구에 크게 이용될 가치가 있음이 드러났으리라 생각된다. 이제 새삼 그것을 요약하여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다. 후대의 한 이두 문헌과의 관계를 밝혀 이 책의 성격을 다시 한번 뚜렷이 함으로써 이 글을 마치기로 한다.

그 관계란 이의봉(李義鳳)이 〈고금 석림 古今釋林〉의 〈나려 이두 羅麗吏讀〉를 편찬하는 데에 이 책이 저본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의봉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고금 석림〉을 편찬하면서 많은 문헌을 참

(8) 이들 '白, 爲'의 독법이 후대의 이두 문헌에서 'ᄉᆞᆷ, 삼'으로 나타나는 것은 앞으로의 연구를 기다리기로 한다. 차자의 새김에 대한 고려에 의한 변화인지, 중세 국어의 독법으로 추정되는 'ᄉᆞᆷ, 삼'과 공존하던 독법인지 문제인 것이다.

교하였고, 그 문헌은 각 편의 머리에 밝혀 놓았다. 〈나려 이두〉에는 그러한 참고 문헌이 언급되지 않았으나 이 〈이문〉이 참고된 것은 분명하다.(9) 〈나려 이두〉에 수록된 이두 항목은 172 항인데, 그중 126 항이 〈이문〉에 나타나는 것이 그것을 웅변으로 말하는 것이다. 더우기 126 항 중에서 잘못된 차자와 한글 독음은 〈이문〉의 잘못을 답습한 사실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차자의 경우에, '逃亡合是遣도망ᄒᆞ이고'란 항목이 〈이문〉(4a)에 그대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合'은 '令'이거나 〈이문 대사〉와 같이 '爲'의 잘못이다. 한글 독음도 오자와 탈자가 꼭같이 나타나는데, 〈이문〉을 뒤에 대조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易亦이낙혀—易亦아ᄂᆞ혀(2a)
乙仍于지ᄉᆞ루—乙仍于지을우(6b)
使亦不納爲乎樣以ᄉᆞ리여블납양으로—便亦不納爲乎樣以ᄉᆞ리혀브납양으로(4b)

이들 대조에서 부분적인 차이가 없지는 않으나, 크게 보면 첫 예에서의 '낙', 뒷 예에서의 '乙, 爲乎'의 독음 생략은 우연의 일치일 수 없다. 〈이문 대사〉에서는 '아ᄂᆞ혀, 을지ᄉᆞ루, ᄒᆞ온양으로'와 같이 표기되어 있어서 이점에서도 〈이문 대사〉가 〈이문〉을 수정한 책임을 알게 된다. 그밖의 다른 문헌에도 이러한 잘못은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白, 爲'의 한글 독음이 공통되는 사실이 두 책의 관계를 뒷받침한다. 앞의 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들 차자는 〈이문〉에서 '옳, 암'으로 읽혀서 다른 문헌의 '畓, 삼'과 대립된다. 그런데, 〈나려 이두〉에서 '올, 위'로 나타난다. 다음이 그것이다.

爲白去乙ᄒᆞ올거늘, 爲白遣ᄒᆞ올고, 爲白只爲ᄒᆞ올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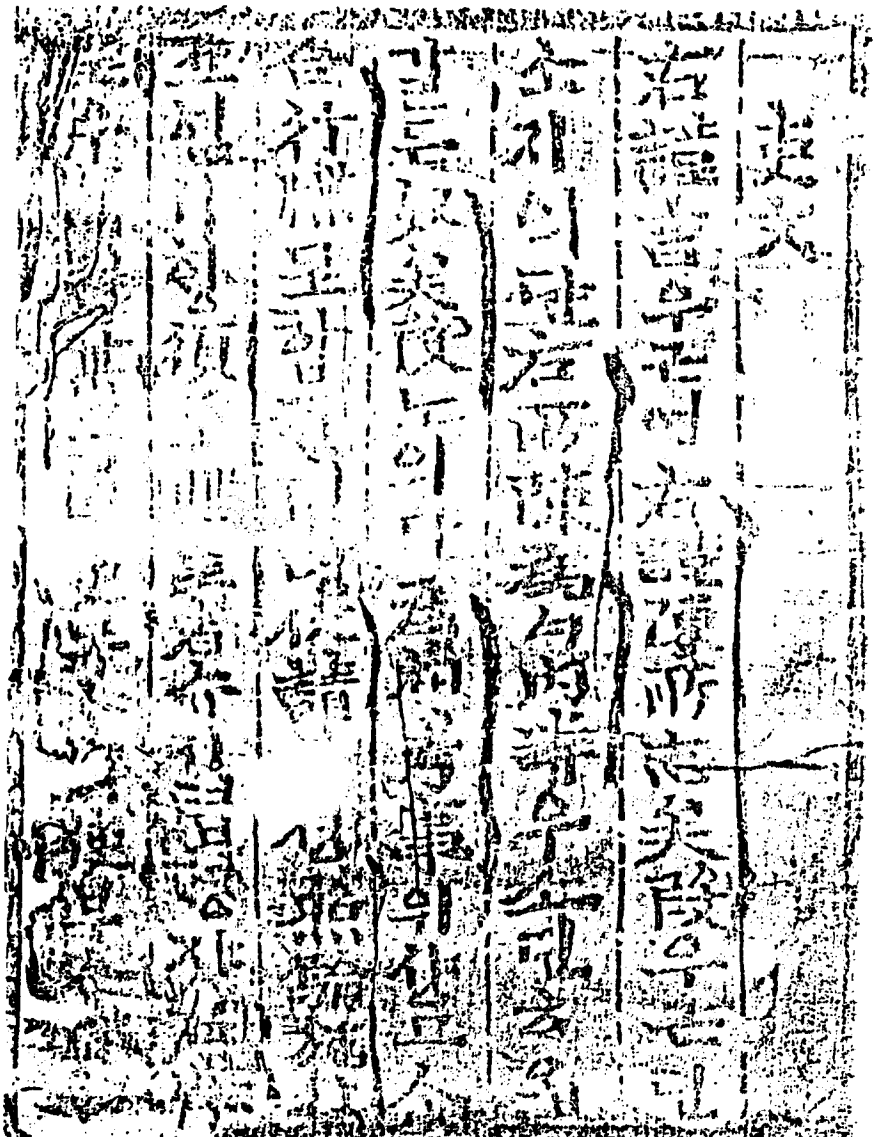
여기의 '위'는 언듯 차자의 독음으로 생각되고, '올'도 '옳'과의 거리

(9) 〈고금 석림〉의 내용은 서울대 도서관 소장의 두 사본에 의한다. 거기에는 상당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도서관에 기증되었다는 백낙준박사 소장의 원본이 공개되면 여기의 기술은 수정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위의 두 사본도 정성을 들인 것이므로 크게 원본과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 느껴진다. 그러나, '삼, 숣' 보다는 '암, 옳'과의 관계가 가깝다. 즉 '爲'가 '삼'과의 유연성에 대한 인식의 결여로 음독되고, '白'이 어려운 독음의 '옳'에서 '올'로 읽혀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나려이두〉가 〈이문〉을 참고하고 약간의 보완을 덧붙여 편찬된 것임이 분명하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문〉을 참고 문헌으로 들지 않은 것은 그 책이 편자 미상인 데다가 서리들을 상대한 책이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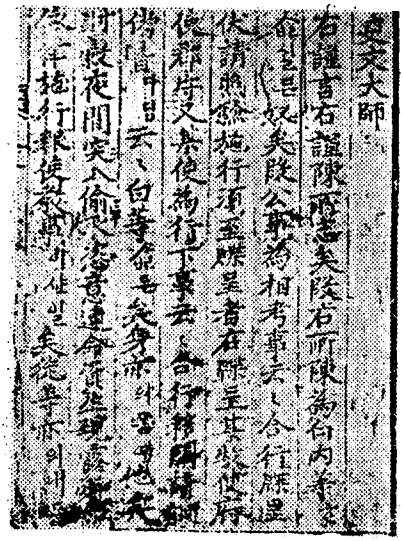
(10) 〈이문〉의 본문을 교감하여 권말 부록으로 붙이기로 한다. 책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영인으로는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활판으로 복간하는 것이다. 이두의 연구에 널리 이용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吏 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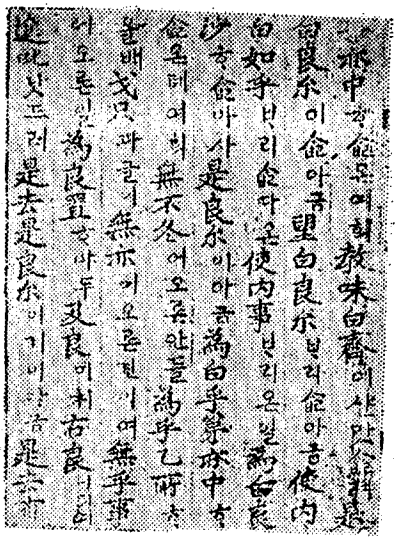


동대본 1a

〈吏文大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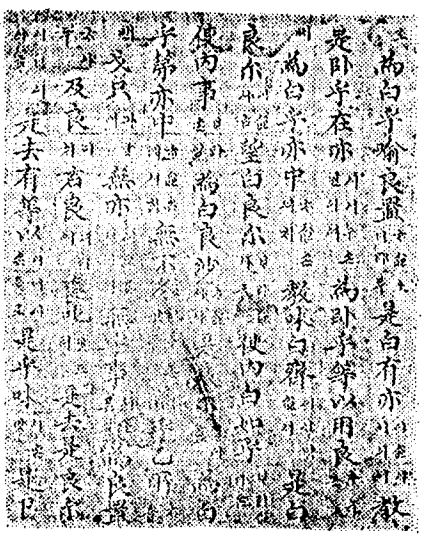
고대본 1a



고대본 7b



가람본 7b



연대본 6a

부록 : 〈이문 吏文〉

1. 이 부록은 동국대 도서관 소장 〈이문〉의 본문을 원본의 행관에 따라 조판한 것이다.
2. 행의 길이가 고르지 않은 것은 원본의 1행 자수가 14~19자로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원본의 마멸된 부분은 〈이문 대사〉와 〈리두 연구〉에 소개된 〈이문〉에 의하여 복원하고, 완전 마멸은 □, 부분 마멸은 △로 표시한다.
4. 원본의 분명한 잘못은 본문에 *표를 하고 난 위에 교감하여 놓는데, 근거가 된 문헌을 괄호 안에 표시한다. 그 약호는 다음과 같다. 한자와 이두의 한글 독음이 독특한 것은 그대로 둔다.

(사) : 〈이문 대사〉 목판본.

(연) : 〈리두 연구〉의 〈이문〉.

(?) : 이두 자료에 의한 필자의 추정.

時覽

吏文抄

(앞표지)

吏文

右謹言우근언右謹陳所志矣段우근단
소지의단右所陳爲白內等우소단ᄒᆞᆷᆞᆯᆞᆷ
갈든奴矣段노의단爲相考事위샹고ᄉᆞ
合行牒ᄒᆞᆯ합힝텹뎡伏請복쳥照驗施行
죠험시힝須至牒ᄒᆞᆯ者ᄉᆞᆫ지텹뎡쟈右牒
ᄒᆞᆯ우텹뎡某모牧使목ᄉᆞ府使부ᄉᆞ郡□守

(一A)

*현(연)

군슈某使爲모ᄉᆞ위行下事힝하ᄉᆞ合□行□移

關請합힝이관쳥侈音다딤白等숣등矣身

亦의몸여他矣財穀타의지곡夜間突入

야간돌입恣意偸取ᄌᆞ의투취連命資生

년명ᄌᆞ싱現露辭緣*힌로ᄉᆞ연依律施行

의눌시힝報使敎事보ᄉᆞ이샨ᄉᆞ矣徒等

亦의내등이여矣身向爲良의몸향ᄒᆞ야矣

(1B)

*ᄂᆞ(사·연)
*젼(연)
*여(사·연)
*리(사·연)

身耳亦의몸ᄇᆞ려易亦아*ᄂᆞ혀專亦*젼혀使亦ᄉᆞ
*릐어先可아직最只안직敎是이시物物갓ㄷ
白活발괄這這ᄌᆞᄌᆞ追于조초別乎벼림
毋不嘸쓴안디帖字톄ᄌᆞ件記ᄇᆞᆯ긔置簿
티부除良더러捧上밧자紘如시우*릐初亦쵸
혀役只겻기導良드듸야舍音ᄆᆞᄅᆞᆷ擬只시
기的只마기爲只爲ᄒᆞ기암卜定지뎡是如

(二A)

**러(사·연)
**야(사)

*계(?)

*원(?)

이다良中沙아히사始叱비롣謀計모계向入
앗드리*下手不得햐슈모질更良가서아*作文
질문尺文자문不多안더遲晩디만推考츄
고報狀移文보장이문關字粘移관즈쳠이
秘密私通비밀ᄉᆞ통相考處置샹고쳐티
斟酌分揀짐쟉분간招引設計토인셜게*
懲戒奸猾딩계간활作孼援引작폐완인*

(二B)

*리(사)

决罪决杖결죄결댱爲等如ᄒᆞ트러岐如가르리 *리

其等徒저드내憤怒發惡분로발악爲去等ᄒᆞ

결등爲去乙ᄒᆞ거늘粗也아야라爲乎所ᄒᆞ온배

詮次以젼ᄎᆞ로爲白齊ᄒᆞᅀᆞᆷ져爲白置ᄒᆞᅀᆞᆷ두

爲白遣ᄒᆞᅀᆞᆷ고搜括捉 수괄착송擲

奸看審뎍간간심丐乞荒唐개걸황당

三切鄰幷以삼졀린아오로爲白等ᄒᆞ

(三A)

**납(?)
**偏(연)
**편텽(연)

ᄆᆞᆷ든 典當以면 당으로 爲乎ᄒᆞ온 爲白
良尒ᄒᆞᄆᆞᆷ아금 爲卧乎ᄒᆞ누온 爲白良結
ᄒᆞᄆᆞᆷ아져 爲白如可ᄒᆞᄆᆞᆷ다가 爲白有昆ᄒᆞ
ᄆᆞᆷ잇곤 爲白置有亦ᄒᆞᄆᆞᆷ두이시니여 爲行
如可ᄒᆞ녀다가 閑良閑丁한량한뎡餘丁以
여뎡으로 抄付受贈쵸부슈증納賂陰囑
남뇌음쵹 *偏聽飾詐*편텽식사 符同頑吏

(三B)

*令(?)

부동완리欺罔官員긔망관원逃亡*合是遣
도망ᄒᆞ이고爲白乎事ᄒᆞᄋᆞᆷ온일爲白乎
喩ᄒᆞᄋᆞᆷ온디爲乎弥ᄒᆞ오며諸雜事考准
계잡ᄉᆞ고尽未盡條件乙良미진됴건으란囚
禁督促슈금독촉秩ㄷ以디딜로惠伊分

*간(?)

揀저ᄀᆞ리분*가勢家投托□세□가□투□탁壓
良爲△賤□압□냥□위□쳔□僞□造□文□記□위□조□문□긔

(四A)

*쳐(연)

*오(사)

*ᄒᆞ온양(사)

□鄕 □里 □不 □睦 □닌 □리 □블 □목 □用 □術 □書 □員 □용 △술 △셔

원頑惡鄕里완악향니恃老爲惡 □시 □로

위악非理好訟비리호숑輕蔑士族경멸

ᄉᆞ족凌慢長上능만댱샹年壯處女년장*쳐

녀萬端侵責만단침칙爲乎矣ᄒᆞ*온더便

亦不納爲乎樣以ᄉᆞ리혀브납*양으로次知竝

囚ᄎᆞ디ᄀᆞᆷ슈爲白沙餘良ᄒᆞᆷ산나마又爲精

(四B)

*경(?)

兵抄出우위*졀병초출爲白卧乎所ᄒᆞᆷ누온

*삭(연)

배加于支當不得더욱지당모질極爲悶望

극위민망爲白去乙ᄒᆞᆷ거ᄂᆞᆯ謀免拒逆모면

*ᄒᆞᆷ오며(?)

거역秘密捕捉비밀포착累朔囚禁누각*

슈금 白乎旀鄕里人段置닌리인단두常

爲蔑畧샹위멸략詈罵惡談니매악담

易亦對答아ᄂᆞ혀디답爲白在如中ᄒᆞᆷ견

(五A)

*겹(?)

*격(?)
*잡(?)

*명(?)

다히 決不安接결블안겹爲白昆ᄒᆞᄋᆞᆷ곤
科ㄷ分揀과ㄷ분간使得存接ᄉᆞ득존*겹爲白
良沙ᄒᆞᄋᆞᆷ아사洞里等狀동리등장始訟元情
시숑원졍決得無期결득무긔曖昧莫甚이미
막심許多卜役허다지역並只다므기役只除
良기*긱기더러雜物以收合*잠믈로슈합定日
納官*녕일납관爲有去乙ᄒᆞ임가늘罰定

(五B)

*을지그루(사)

催促벌명최촉乙仍于*지즐우粗也措備
아야라조비已爲捧上이위밧자尺文受出자문
슈출爲有在而亦ᄒᆞ잇견마리여更生謀計
깅싱모계誣訴白活무소발궐發明無
路발명무로仰不下手앙블햐슈接足
不得졉족모질爲有如乎ᄒᆞ잇다온適音相
逢마즘상봉不意追逐블의튜튝頭髮

(六A)

*예(연)

**拖(사·연)
*타(연)

*ᄒᆞᆷ(?)

扶曳두발부*에滿庭周揮만뎡듀휘軍令決杖
군령결댱僅得解放근득히방誣飾欺罔무식
긔망萬般侵勞만반침노別乎督徵별오독딩
爲巴只ᄒᆞ도로기揚臂極目양비극목恃其頑
惡시기완악威力據奪위력거탈任意私用
임의ᄉᆞ용延拖不納연*다브랍加于過甚더욱괴
심爲白齊ᄒᆞᆷ*져況旅當番臨迫ᄒᆞ물며당번

(六B)

*뉴(?) *욻(?) *열(연) *온(사) *하(연)

님박悶望無際민망무졔流離絃如*누리시우
러安接不得안졉모질爲白去乎ᄒᆞ*욻가
온一時推閱일시츄*일的實爲白去等뎍
실ᄒᆞ욻갈든勿侵事乙믈침ᄉᆞ를分揀解悶
분간히민是白在如中이욻견다히使無民
寃ᄉᆞ무민원爲白乎去ᄒᆞ욻온가望良白去
乎ᄇᆞ라욻가*오參商行下참샹힝*차敎矣

(七A)

*ᄉᆞ(연)

*졀(?)

이샤ᄃᆡ 唯只오직 寃悶辭緣段원민ᄉᆞ*연딴
根脚不知근각브디不干之人乙불간지인을
一族之役일족지역無數被侵무수피침其等
徒根派저드내근패詳細査覈샹셰사핵曾
呈立案幷以증뎡닙안아오로退伊相考를
리샹고不干與否불간여부切鄭色掌져린식장*
推閱次以츄열ᄎᆞ로物故公文믈고공문追于

(七B)

*뭐(?)

現納조초현납潛隱充定즘은츙명暗受立
案乙良암슈닙안으란取納交周爲白遣취납
효쥬ᄒᆞ옵고今後乙良금후을안一切勿侵일졀
물침使之安接ᄉᆞ지안졉萬蒙天恩만몽텬은
爲白在如中ᄒᆞ옵견다히苦務殘民고무잔민
番價整齊번가졍졔都目牌字도목*미ᄌᆞ
蝙蝠之役편복지역都將發遣도쟝발견

(八A)

勦捕堅囚쵸포견슈衙門請托아문청탁△毁訴呈狀훼소뎡당百般稱頃빅반칭탈欲免其役욕면기역逢點時公然不現봉뎜시공연블현罪不可掩죄블가엄泛濫莫甚범남막심爲白乎矣ᄒᆞ옳오디終時發明죵시발명其惡不測기악블측如此奸猾之人乙여ᄎᆞ간*괄지인을不爲重治블위듕티後弊難防후폐난방

(八B)

*활(?)

*당(면)

*揩(사)

每欲冒頓ᄆᆡ욕모탈不無其責블무기칙着
枷下獄ᄐᆞ가하옥項鎖足鎖항사쇽사從重
決杖죵듕결*댜使無後弊ᄉᆞ무후폐謀弄롱
狀모롱뎡장僞造文記위조문긔印後加書인
후가셔飛*揩洗濯비ᄇᆡ세탁官行爲私관힝위
ᄉᆞ謀術奸謀모술간모凌慢作弊作亂無數
능만작폐작난무수謀陷誣訴모함무소

(九A)

*공(연)

*오(사·연)

*권(연)
*경(연)
*슈(연)

橫行收斂횡힝슈렴侵民取利之物乙良△△
침민취리지물으란不分是非블분시비盡
爲屬公전위속고*以懲其濫이딩기남是白乎
旀이옮*으며前頭良中젼두아히矣身茂火
의몸더브러一應刷馬일응쇄마雜役推刷監
考잡역츄쇄감고捕盜部長포도부장勤農
約正권롱약졍陷穽守直함졍수딕是沙
**

(九B)

*슈(연)

餘良이산나마鄕所座首향소좌슈別監
品官별감품관丘從使令구죵ᄉᆞ령羅將
吹手라쟝취*수軍器庫直군긔고딕伺侯別
定ᄉᆞ후별뎡色吏押領식니압녕罪人拿
去죄인나거移文到付이문도부關字成給
ᄀᆞᆯᄌᆞ셩급爲有置ᄒᆞ잇두自權文書ᄌᆞ권문
셔身致富足신티부족此必侵民作弊ᄌᆞ

(十A)

*렴(?)

*결(연)

필침민작폐百般謀勅빅반모틱收

斂以爲己物슈염이위긔믈甘當重治감

당듕티仕官出干ᄉᆞ관출궐粘連呈狀

쳠년뎡장論罪除良논죄더러已爲決

折이위결절更良訟事가서야숑ᄉᆞ眞僞現

捉진위현착更推結尾깅츄결미交易放

賣교역방매逃躲付火도타부화鬪失差役

(十B)

**차(?) **헐(연) *宥(사) *여(연) *렬(연)

셔실 *치역 歇役重役 *힐역등역成川浦落
셩천개락 違法決給위법 급重記磨勘등
긔마감 頒賜行移반샤힘이 *有旨箋文유지
젼문如前待侯 *어젼디후 歐打叱 구타즐욕
結縛亂打결박난타皆是迷劣기시미 *릴風
損旱災풍손한지大倘同儻대당동당盡
力搜括진녁수괄乘夜突人승야돌입衝

(十一A)

火煨燼흉화의신恐其反坐공기반□좌□構□成

虛事구셩허ᄉᆞ暗然還放암연환방知□非

誤决디비오결姑此書塡고ᄎᆞ셔딘

(十一B)